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8. .

제출자 : 행정자치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중앙행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의 근속승진 요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조정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총사업비 금액이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기준을 ‘2천만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정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함

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의 장·절 체계 정비사항 반영

제주특별법의 장·절·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에 따라 조문순서와 용어를 보완하여 법령이해도를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 교육부차관 ·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외교부차관 · 통일부차관 · 법무부차관 · 행정자치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보건복지부차관 · 환경부차관 · 고용노동부차관 · 국토교통부차관 · 해양수산부차관 · 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9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1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2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제13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 무기: 권총과 소총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은 제외한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보고,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치경찰단장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확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5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정: 3년
2. 자치경감: 3년
3. 자치경위: 2년
4. 자치경사: 2년
5. 자치경장: 1년
6. 자치순경: 1년

제16조(근속승진) 법 제113조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2.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7년 6개월 이상
3.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6년 이상
4.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5년 이상

제1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에 실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항만·도로·용수·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19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1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3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24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

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2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개발센터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4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할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6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항만과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39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

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1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2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3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4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즐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 필수 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규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또는 교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8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⑨ 법 제216조제2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⑩ 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현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초·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 및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217조제3항·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2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49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
2.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로부터 제1항의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운영비: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되,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비: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지원 요건 및 지원 시기)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지사에게 설립 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에서 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초기운영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한다.

②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해당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도지사는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초기운영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도지사의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사업 실적 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주자치도의 검토의견서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서
5. 도지사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유치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증빙 서류
7. 해외 교육기관의 존재를 입증하는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과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검토의견서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외 교육기관의 우수성

가. 해외 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나. 해외 교육기관의 명성도 등

2. 국내 분교 설립·운영계획

가. 설립·운영계획

나. 지역·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교사(校舍)·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립학과, 학생정원,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제55조(사업 수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과 해당연도의 보조금 액수와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적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에게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설립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과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시설물 및 기자재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설립·지원에 관한 협약 및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과 환수 계획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실적보고)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교육기관의 보조금 사용실적과 변경 내역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의 '즐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제59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하여는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1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중·고등학교를 병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학교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와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에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3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4조(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

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7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9조(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71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243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제72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만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제73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제7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77조(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8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81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82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3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 의결을 마친 후 발전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5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8조 본문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별표 2]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4조제4항 관련)

체류지역 확대 허가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허가번호(N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합니다.

You are permitted to extend the sojourn area from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o the other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until _____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1) of Special Act o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허가일(Date of Permit):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JEJU IMMIGRATION OFFICE

50mm×70mm

(무기·분사기 등) 사용보고서

결재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용 일시				
사용 장소				
사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직업			
	주소			
	[] 사용대상자가 2명 이상			
종류 · 수량	[] 무기	종류:	수량(회수):	
		구경:	모델명:	일련번호:
	[] 분사기 등(종류: 수량(사용량):)			
사용 경위				
피해 상황 (인적 · 물적)				
사후 조치				
현장책임자 (사용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사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대상자를 특정할 만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사용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에 적습니다.
3.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경, 모델명, 일련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성	Surname	한자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 M
명	Given names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직장명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본국 주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No.		
입국일 Date of Entry		여권번호 Passport No.		체류 예정지역 Intended Area of Sojourn	
입국 목적 Purpose of Entry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체류 예정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신청 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동반자 Dependent in Korea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남 M 여 F	성별 Sex	남 M 여 F
	관계 Relation				
	비고 Remarks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확인사항	허가사항		결재		
입국일	번호		접수일	소장	
입국항	날짜		접수번호		
체류자격	자격(기간)		과장		가, 부
체류기간	지역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